

준비서면

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원고(항소인) 김명호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피항소인, 이하 "피고"라고 합니다)의 소송대리인은 귀원의 2006. 10. 10.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음



1. 증인 정봉화, 배형주 신청

원고에 대한 교원징계절차에서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들이 모두 사실이고 따라서 피고의 징계처분 및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모두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수학과 학과장으로서 수학과에서 제출한 각종 정빙자료를 직접 수집, 작성한 정봉화 교수 및 제9호증의 9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당시 수학과 4학년생으로서 95학년도 1학기 위상수학1 과목에서 원고로부터 낙제점수(F)를 받아 학교 측이 마련한 보충강의를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배형주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2.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가. 성적 산출 방식에 대하여 성균관대학교학칙 제35조는 「① 학생은 해당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있다. ②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예습·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학사에 관한 내규 5. 성적평가는 「① (평가방법)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표시되어 시

험 성적, 출석 상황, 과제보고서 및 평소의 학습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칙 및 내규에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성적평가방식은 절대평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평가방식이라 하여도 자의적인 성적 부여를 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칙에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예습·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성적을 산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평가표는 1995년 2학기 논리학 성적기록표의 예와 같이 항목별로 나누어서 기재하도록 성적기록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공정성 및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의적인 성적평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동일한 점수를 일괄적으로 부여했다는 것은 학생들의 출석·과제 및 시험성적 등 제반 성적평가 요소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하겠습니다.

① 1991학년도 2학기 위상기하학 : 24명 수강생중 물리학과 학생 1명(F부여)을 제외한 23명 전원에게 A+ 등급 부여. 특히 22명에게 96점을 일괄적으로 부여, ② 1992학년도 2학기 위상수학2 : 10명 수강생 전원에게 B 등급 부여. 특히 전원에게 82점을 부여, ③ 1993학년도 2학기 위상수학2 : 20명 수강생중 3명(A+ 부여)을 제외한 17명 전원에게 B+ 등급 부여. 특히 17명에게 일괄적으로 85점을 부여함.

3. 을 제3호증의1 기재와 관련하여 원고 징계사건의 재심청구에 관한 변명자료 중 누락된 95 내지 99쪽, 128 내지 131쪽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을 제20호증의 1, 2 | 각 교원징계의결요구 및 의결요구서 |
| 1. 3, 4 | 각 제1차 교원징계위원회 회의결과보고 및 회의록 |
| 1. 5 | 제2차 교원징계위원회 회의결과보고 |
| 1. 6 | 교원인사기록카드 |
| 1. 을 제21호증 | 학사에 관한 내규 |

2006. 11.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이재원



정재웅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귀중

법무법인 一. 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7-2,3 우암빌딩 2,3층
TEL. 595-5500(대표) FAX. 593-2559(2층), 536-4450(3층)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우 110-745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53번지

/ 전화(02)760-1044/전송(02)744-2453

문서번호 : 법인 제 376호

시행일자 : 1995. 9. 6. (년)

(경유)

수신 : 교원징계 위원회 위원장

참조 :

선	결	위원장	95. 9. 12	지	시
접	일자 시간			결	간사
수	번호	교장	1	재	
				공	
				합	

제목 : 교원 징계 의결 요구

교무 제 376호 ('95. 7. 19.)와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교원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제출 합니다.

유첨 : 교원 징계 의결 요구서 1부

끝.

을
제
20
호
증
1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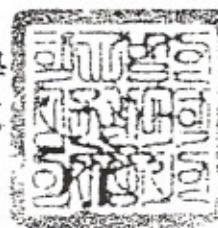


교원 정계의결요구서

인 적 성 명	한글	김명호	주민등록번호	570217 - 1066932		
	한자	金明浩	직위(급)	조교수	재직기간	4년 6월
사 소 속	이과대학 수학과					
항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2동 248-9					
정 계 사 유	사립학교법 제 61조 (정계의 사유 및 종류) 1항 1. 해교행위 2. 학사질서 문란행위 3. 타교수 비방 4. 교육자로서의 자질의혹					
정 계 의 결 요 구 자 의 의 견	본교와 정계 해당자가 속해 있는 학과 교수 및 학생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신증하고도 적절한 의결을 요함.					

사립학교법 제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學校法人 成均館大學
理事長 白南檍



교원 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을
제
20
호
증
2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우 110-745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53번지

/ 전화(02)760-1044/전송(02)744-2453

문서번호 교정위 제 2 호

시행일자 1995. 9. 13. (년)

(경유)

수 신 : 내부결재

참 조 :

취급		위 원 장
보존	년	
간 사	담당	
기 안	이 종	협 조

제 목 : 제1차 교원징계 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95. 9. 12일 개최된 제1차 교원징계 위원회 회의결과를 별첨과같이 보고합니다.

첨 부 : 회 의 록 1부

을
제
20
호
증
3

교원징계 위원회 위 원 장

제 1차 교원징계 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 일자	'95. 9. 6.
위 원 정 수 : 7 명	재 적 위 원 : 7 명

1. 일 시 : 1995. 9. 12. (화) 14:05 - 15:10
2. 장 소 : 대학본부 이사장실
3. 참석위원 : 김경수, 정경모, 전몽각, 정성근, 김병택, 심윤종, 원동호
4. 이사장인사: 백남억 이사장은 참석 위원들에 대한 인사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고도 적절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부탁하고 퇴장 하다.
5. 위원장선출: 골이어, 참석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전몽각 부총장을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다.
6. 개회선언 : 전몽각 위원장은 성원이 됨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7. 경위설명 및 향후일정 논의 :
 0. 전몽각 위원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해당교원의 소속학장인 김병택 위원에게 그간의 경위 설명을 요청하다.
 0. 김병택위원의 경위 설명에 이어 심윤종, 원동호 위원 순으로 보충 설명을 하다.
 0. 정경모, 김경수 위원 : 교수는 독립된 권한을 가진 신분이므로 징계 요구 사유 중 법적 요건에 위배된 행위에 한하여 세밀한 증거 및 증빙자료가 준비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하다.
 0. 위원장은 차기 회의에서 해당 당사자 중 학교측(해당학과)의 소명자료 및 진술을 요구하기로 하다.
8. 차기 회의 일정을 1995. 9. 19 (화) 15 : 00 대학본부 이사장실에서 개최하기로하고 15 : 10 분에 산회하다.

을
제
20
호
증
4

기록자 : 간사 최윤한

확인자 : 위원장 전몽각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우 110-745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53번지

/ 전화(02)760-1044/전송(02)744-2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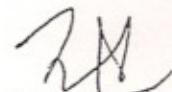
문서번호 교정위 3 호

시행일자 1995. 9. 19. (년)

(경유)

수 신 : 보 고

참 조 :

취 급		위 원 장
보 존	년	
간 사	장	
기 안	이 종	
		협 조

제 목 : 제 2차 교원징계 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1995.9.19. (화) 개최된 제 2차 교원징계 위원회 회의결과를 별첨과 같이
보고 합니다.

첨 부 : 제 2차 교원징계 위원회 회의록 1 부. 끝.

을제
20
호증
5

교원 징계 위원회 위 원 장

이민 20 번지 6

① 분류번호	11-11-11		③ 학 급	11-12 연호	
② 주민등록번호	570217-1066932		④ 성 명	全 明 洪	
⑤ 본적	忠南牙山郡陰峰面松村里		⑥ 주소	11-11-11-11-11-11	
⑦ 주관	金 海		⑧ 전화번호	00-00-00-00-00	
⑨ 담당과목	수학		⑩ 복	부	
⑪ 해당 임금 액 계	미 월	출용기호 체계등위 미필사유 역종 군별	군 번	임대년월일 제대년월일	MOS
⑫ 병역 관계	8% 정지 면제		병과 세 급		
⑬ 신체 상태	신장 체중 168.5 cm 60 kg	시력 색 맹 혈액형 좌 (O.001) B	군 병 상태 성장상태 증 교 취 미 사 기	86.0 1066913 B 상	86.0 1066913 B 상
⑭ 개인 재산 사항	등 산	부동산 부 동 산	가 우 부업명 부업일수 부업일수	부업명 부업일수 부업일수	부업명 부업일수 부업일수
⑮ 내무부 기획부	내무부 국가안전부	차가·차가	-	-	-
⑯ 관계 부모	성명 金 勲培 300-223- 1066914	학력 중졸	직업·직장·직위 숙박업소 협회	관계 성명 金 基山 59-6-3- 203-420	학력 직업·직장·직위 대학원생 주부
⑰ 사 행	南順佑 311-228- 2066913	주부	비서	金大佑 86-0-8- 1066913	
⑱ 부부 수아동생	金英權 600-203- 2066928	대졸	유학생		
⑲ 수아동생	金明姬 62-0611- 2066921	대학생			
⑳ 학 력	기간 1972.3.1 1975.2.28	학교명 및 전공학과 서울고등학교	학위 학사	기간 1974.9.1 1979.5.31 Univ. of Michigan	학교명 및 전공학과 미국 백화
㉑ 직 명	법 인 직	감독청 보고·승인	비 고	학교급별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자직별 담당과목 취득일
㉒ 소교수	설진관대학 법학과(1973.3.5)	신입생			
㉓ 교원임명 사항					



주 제 목 제 작	기 간	국 명	목 적	외 국 어 명		상 증	증 명	하 와
				(21) 외 국 여 행 및 수 화	(22) 외 국 어 음 악			
서 지 서	제 시 세 영	발 행 처	발 행 일	제 시 세 영	발 행 처	발 행 일		
연 구 논 문	논 문 명	발 표 기 관	발 표 일 자	논 문 명	발 표 기 관	발 표 일 자		
(23) 외 국 여 행 및 수 화	Toral Actions on 4-Manifolds and Their Classifications. Ph.D.Thesis The Diffeotopy Group of The Twisted 2-Sphere Bindings over The Circle Homotopy Invariants of Nonorientable 4-Manifolds. 4-Manifolds with a Toral Action Toral Actions on 4-Manifolds and Their Classifications	A.M.S. Trans. A.M.S. Trans. Proc. of Workshops in Pure Math. 1989 A.M.S Trans.	1988.5.1 1991 1989.7.1 1990.12.31					
주 제 목 제 작	1. 분류번호(①)은, 기재하지 말 것. 2. 원칙(④), 본체(⑥), 본관(⑧), 기타 인명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할 것. 3. 주소(⑦)는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되 연필로 기재할 것. 4. 기타 사항은 한글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서(⑩), 연구논문(⑪)은 원어로 기재할 수 있음.	본 인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서약함. 1990.12.31 성명 / <u>김명浩</u> 	기 록 사 항 화 인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19	4 21 22	성 균 관 대 학 교 총 장

3. 학사에 관한 내규

1. 교과목의 구분

-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 ② 교양과목은 필수과목인 기본교양과목과 선택과목인 계열교양과목으로 구분한다.
- ③ 전공과목은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 ④ 교직과목이란 교직 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학생 중 제2학년초에 총통학교 2급 정교사, 유치원 2급 정교사(아동학과) 또는 사서교사(문현정보학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직 수강생으로 선정된 자가 제2학년 내지 제4학년에 이수하는 과목을 말한다.
다만 사범대학 각 학과의 교직 과목은 그 학과 소정의 필수과목을 받는다.
- ⑤ 교과목의 이수 구분과 이에 따른 학수 번호는 학과별 교육 과정표와 같다.

2. 교과목의 이수

- ① (교양과목)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총 42학점(단, 법과대·사범대·약학대는 45학점, 체육대는 50학점, 이과대·공과대는 53학점) 이상으로 하며, 각 대학별 이수학점에 미달되는 학점은 계열교양과목 등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계열교양과목) 계열교양과목은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과 그외의 과목을 교양과목이수 학점에 맞추어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전공과목)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선택 과목은 학과별 교과 과정표에 전공선택과목으로 표시된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규정된 최저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일반선택과목) 일반선택과목은 소속학과 교육 과정표에 제시된 전공선택과목중 최저 이수학점을 초과한 과목과 타학과 전공과목 및 학과 교양이수학점을 초과한 계열과목중에서 임의로 선택 이수할 수 있다.
- ⑤ (교직과목) 교직과목의 이수는 교직 과정 이수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 ⑥ (부전공과목) 부전공 학과의 선택 및 과목의 이수는 학칙 시행 세칙 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 ⑦ (복수전공과목) 복수전공학과의 선택 및 과목의 이수는 학칙 시행 세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다만 부전공 과정을 이수하고 다시 그 과정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기이수한 부전공 학점을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전공 자격은 소멸된다.
- ⑧ (교직 부전공과목) 교육학과, 한문교육과 및 역사교육과 재학생으로서 교직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이 과정에서 이수한 부전공과목이 제⑥ 항의 부전공과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학칙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수강신청

- ① (수강신청의 절차) 재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단발기를 통해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한다.
- ② (수강신청 학점)
 - (1) 매 학기 18학점을 수강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20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학생은 다음과 같다.
법과대학·약학대학: 21학점(1989학년도 제1학년부터 적용)
사범대학: 21학점(1988학년도 제1학년부터 적용)
 - (2) 수강신청과목 변경
 - (1) 수강신청과목 변경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매 학기초 지정된 기간 내에 단발기로 등학여 직접 변경을 해야한다.
 - (2) 수강신청과목 철회
 - 가.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내에 담당교수, 학과장 및 학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철회권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철회후 총 신청 학점이 최소 14학점(한 학기는 제한없음)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다.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외한다.

을제
21
호중

- ④ (시간 충복 과목) 수업 시간이 충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무효가 된다.
- ⑤ (수강반 지정) 동일과목이라도 반드시 지정된 반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 ⑥ (선수강 금지) 소속학과 상급 학년의 전공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다만, 학칙 제 6 조 제 2 항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자가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⑦ (수강신청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리)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학기 교과목의 수강과 시험에 응할 자격이 있으며,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사경고를 한다.

4. 추가시험

질병 기타 두드러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실시일전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기간에 추가시험에 응하여야 한다.

5. 성적 평가

① (평가 방법)

학업 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표시하되 시험 성적, 출석 상황, 과제 보고서 및 평소의 학습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성적의 위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위조 한다.

(1) 사무 착오에 의한 성적

(2) 정학 이상의 징계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2/3이상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자의 학기 성적의 전부(교육실습 성적은 제외)

(3) 출석 디탈파목의 성적

(4) 소정 학점을 초과하여 얻은 학점

(5)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6) 장기 휴학(군입대 인정 학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및 자퇴자에게 주어진 성적(교육실습성적은 제외)

(7)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8) 취소한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2), (3), (7)의 성적은 위조후 F로 처리한다.

③ (성적 이의 신청)

(1)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학기 학업성적표를 받은 후 소정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 교수, 강사에게 이의신청을 한다.

(2) 담당교수, 강사는 학생의 이의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소정 서식의 성적 경정원(정정 이유, 담당자 등 증빙자료 첨부)을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적 평가자료 보존)

출석부, 과제보고서, 실험실습보고서, 시험답안지 등의 성적 평가자료와 교수보관용 성적기록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1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6. 졸업논문제 시행 및 관리

①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의 평가)

(1)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및 실기발표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가"로 평점한다. 판정에 있어서 2인의 평점이 가·부 상충인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3인 이상인 때에는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판정 한다.

다만, 실기발표의 경우 발표 작품 종수가 2종 이상인 때에는 작품당 배점은 100점으로 하고 총 배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가"로 평점 한다.

(2) 졸업논문과 논문심사에 관련된 서류는 학과장이 1년간 보관한 후 폐기 한다.

② (졸업 종합시험관리 및 평가) 졸업 종합시험은 해당 학과장 및 학장이 다음 사항을 관찰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이의 판정은 학과장, 학장 및 학과장 전원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과목당 배점은 100점으로 하고 총점의 60%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 한다.

(1) 응시자격 확인

(2) 시험일자, 시험과목 등 계시

(3) 은계위원 위촉

(4) 채점위원 위촉

(5) 채점방법 결정(봉인 채점방법을 선택 함)

(6) 합격자 사정(소정 판정표에 의거 사정 함)

(7) 졸업 종합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소정 서식)

(8) 시험지, 기타 시험관계 서류는 1년간 보관한 후 폐기

③ (졸업논문 작성)

(1) 논문 체제: 서식은 흰서로 하고 용지는 200자 원고지 또는 16절지로 한다.

(2) 작성 요령

(가) 표지는 소정 용지로 한다.

- (나) 논문에는 목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다) 주는 원고지 말에 기술하여 본문과의 연관 번호를 넣어야 한다.
- (라) 인용(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 본 문 칸에 인용 순서대로 모아 기재하여야 한다.
참지의 경우: 필자, 참고 문헌명(서명), 질 (호), 면, 년도
단행본의 경우: 저자, 서명, 면(페이지), 출판사, 년도
다만 인용 범위가 전절인 경우에는 연수를 빼고 절은 그 자리에 기입하여야 한다.
- (마)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고 모든 단위는 원어로 기입하여야 한다.
숫자표시 예: 78°C~75°C, 650ton
단위표시 예: m, kg
(바) 논문에 나오는 고유명사는 반드시 원어를 써야 한다.
- (3) 제출 부수: 1부
- (4) 제출 기일 및 계출처: 11월 말일(후기출업 예정자는 5월 말일)까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 (5) (실험실습 보고, 설기발표 처리) 해당 학과장이 주관한다.
- (1) 실험실습 보고서 작성 흐름: 출입논문 작성 요령과 같다.
- (2) 설기발표·작품제작: 전 제작 과정을 달랑 지도 교수가 직접 지도제작하게 된다.
- (3) 실사 방법: 출입논문 실사 규정에 준하여 2인 이상의 실사위원으로 하여금 실사 판정한다. 실사위원은 학과장이 선정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는다.
- (4) 결과보고서 제출: 학과장 및 학장을 실사 결과 보고서(실험실습보고서, 설기발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소정 서식).
- (5) 서류 보관: 실험실습평가 관계서류, 설기발표, 작품의 사진 기타 참고 서류는 학과장이 1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7. 휴학

- ① (단기 휴학)
- (1) 대상자
(가) 개인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 다만, 제 1 학년(당 해년도 신입학자) 제 1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으며, 제 2 학기에 휴학을 원하는 자는 등록을

- 필하여야 한다.
- (나) 각 등
(2) 제출기한
(가) 제(1)호 (가) 대상자는 학기초 소정기간 내로 한다.
(나) 제(1)호 (나) 대상자는 수업일수 3분의 2선 이내로 한다.
- (3) 구비 서류
(가) 휴학원서 1종(소정 서식)을 학과장은 경유하여 학적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호 (가)의 1학년 휴학자와 (1)호 (나)의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학적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위 (가)의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질병으로 휴학하는 경우: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1종.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보저히 수학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증빙서류
- (4)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수업일수 3분의 1선 이내에 휴학원서로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 ② (장기 휴학)
- (1) 장기 휴학은 군입대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을 휴학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재학 또는 휴학 중 군에 입대하고자 하는 자는 입대하기 전에 입영명령서 사본을 학적파에 제출하여 장기 휴학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입영 명령서 사본은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장기 휴학처리가 되지 아니한 자는 학적에 의하여 제적된다.
- (4) 입영 기일 연기나 입대 후 귀향조치된 경우 학적과에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8. 복학

- ① (단기 휴학자의 복학) 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서(소정 서식)를 학적파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장기 휴학자의 복학)
- (1) 군입대로 인한 장기 휴학자는 군체대 후 1년 이

- 내에 이수학기에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
- (2) 장기 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원서에 명적확인서(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여 학적과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 (3) 등록은 하고 학기말시험 전에 입대하여 장기 휴학 조치된 자는 계대 후 복학 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입대자 인정학점은 신청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장기 휴학자가 계대 후 만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된다.

9. 군입대자 인정학점

- ① (인정학점 신청) 등록 및 수강신청은 마친 자가 해당학기 총 수업인수의 3분의 2이상은 수강하고 입대할 경우 그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교무과에 입대사실(증명서류 첨부)은 신고하고 성적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영일자 5일전까지 실시되는 학기말시험에는 응시하여야 한다.
- ② (성적 인정) 인정학점 신청 과목의 각 담당교수는 중간시험성적, 평소의 출석 상황, 과제보고서 및 학습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10. 재입학

① (재입학의 제한)

- (1)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여석이 있는 범위 내에서 퇴학 또는 제적 후 10년 이내에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군복무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학칙 제55조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 조과 제적자 및 학칙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 (3) (재입학 절차)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소정 서식)를 보증인 인서로 학적과에 제출하고 기워득 학점수에 의한 학년 조정을 받아 실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다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4) (재입학자의 재학연한)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학년조정된 잔여 수업연한의 1배반으로 하며 등산 6년(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11. 학사 편입학

① (수업 년한과 계학 년한)

- (1) 수업 년한은 2년으로 하고, 계학 년한은 3년으로 한다.

(2) 계학 년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적된다.

② (교과 및 이수)

- (1) 졸업학점은 7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과대학은 78학점 이상, 약학대학은 72학점 이상으로 한다.

(2) 학점 이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교양: 유학 3학점

- (나) 전공필수 및 선택: 학과별로 교육 과정에 규정된 학점, 다만 법과대학은 전공필수 67학점 (교육과정에 규정된 전공필수 과목 중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은 학과에서 별도로 지정함)과 전공선택 8학점 이상, 약학대학은 전공필수 57학점과 전공선택 12학점이상.

- (다) 일반선택: 4학점(나항의 소정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전공선택 포함)이상, 다만 법과대학, 약학대학은 제외.

- (라) 원적대학이 본 대학교인 자는 유학 대신 다른 과목을 3학점이상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적부의 성적기록 관리)

학사 편입학 한 후 취득한 학점 및 성적만을 학적부에 기록 관리한다.

12. 계절제 수업

- ① (수강신청 학점) 1회 6학점 이내로 한다.
- ② (개설 과목) 수강신청 및 등록 인원이 10명 이상일 때 개설한다.
- ③ (수강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개설 기간 및 장소) 제 1 학기 총강 후 캠퍼스 별로 16일간(공휴일 및 시험 시간(1회) 포함) 1, 2학기 과목을 구분 개설한다.
- ⑤ (야간강좌 개설) 18:00이후에 개설한다.
- ⑥ (성적 처리)
 - (1) 성적 평가는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다.
 - (2) 학적부의 성적표시는 별도로 한다.
 - (3) 취득 성적은 졸업 소요학점으로만 인정하고 학사경고, 유급, 장학생 선발 등과는 무관하다.

13. 증명서 발급

① 국문, 영문증명서 종류

- (1) 재학증명서 (2) 휴학증명서 (3) 계학증명서
- (4) 수료증명서
- (5)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포함)
- (6) 성적증명서 (7) 교직과목이수증명서

- ② 받급처: 교무처 학적과(자연과학캠퍼스 교무과, 야간강좌 교학과)에서 받급한다.
- ③ 제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4.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본척,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자는 정정원(사유기재편 호적초본 및 주민등록초본과 2동 첨부)을 교무처 학적과(자연과학캠퍼스 교무과, 야간강좌 교학과)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종업자는 변경할 수 없다.

부 록

-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 (1) 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학년도전 입학생은 총전의 규정에 의한다.
- (2) 제11조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학년도전 입과대학 학사편입생은 총전의 규정에 의한다.